

2003. 12. 8(월) 10:00  
제105회 정례회 산건위 제2차 회의

조례  
검토보고

거창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 .....	1
거창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.....	4

산업건설위원회

[ 거창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  
검 토 보 고 ]

## 1. 검토경과

### 가. 제출일자

- 제 출 일 : 2003. 12. 1.

-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12. 1.

다. 의안번호 : 제 2003 - 64호

## 2.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

### 가. 제정이유

-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일 생산능력 15,000톤이상인 수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지방 공기업 전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
- 미전환시 지방채 발행 불허 및 국고보조사업, 교부세 시책사업 제외 등 각종 재정지원에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
- 2004. 1. 1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

### 나. 주요골자

- 상수도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
- 상수도 사업의 범위를 정함(안 제2조)
- 급수구역을 거창군의 행정구역으로 함(안 제3조)
- 부군수를 관리자로 지정함(안 제4조)

-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함(안 제5조)
- 인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6조)
- 관리자의 변상책임 한계를 정함(안 제7조)
-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- 상수도사업과 기타 유사한 사업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함(안 제9조)
- 회계연도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0조)
- 일반회계등에서 부담할 경비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1조)
-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에서 출자할 규정을 정함(안 제12조)
-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함  
(안 제13조)
- 지방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4조)
- 예산의 탄력규정을 정함(안 제15조)
- 잉여금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6조)
- 회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7조)
- 계리상황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(안 제18조)
- 업무상환설명서의 제출과 공표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9조)
-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20조)
-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21조)

### 3. 검토의견

#### 가. 공기업 전환시의 장점은

- 수도사업은 1일 생산능력이 1만 5천톤 이상인 경우 공기업으로 전환  
하도록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 
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필요.

- 공기업 회계는 독립채산 원칙에 따라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수도 요금인상 후의 현실화율이 69%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필요.
- 부칙 제1조 시행일이 2005년 1월1일부터인데 2005년부터 시행 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.
-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제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 4. 참 고

-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

[ 거창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]  
검 토 보 고 ]

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

- 제 출 일 : 2003. 12. 1.
-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12. 1.

다. 의안번호 : 제 2003 - 65호

## 2.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정이유

-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장 설비를 구비한 하수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공기업 전환조치를 취하여야 함.
- 2004. 1. 1 공기업 전환 업무개시를 원활히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하수도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
- 하수도 사업의 범위를 정함(안 제2조)
- 사업구역을 거창군의 행정구역으로 함(안 제3조)
- 부군수를 관리자로 지정함(안 제4조)

-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함(안 제5조)
- 인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6조)
- 관리자의 변상책임 한계를 정함(안 제7조)
-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- 하수도사업과 기타 유사한 사업을 하수도 특별회계로 함 (안 제9조)
- 회계연도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0조)
- 일반회계등에서 부담할 경비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1조)
-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에서 출자할 규정을 정함(안 제12조)
-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함  
(안 제13조)
- 지방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4조)
- 예산의 탄력규정을 정함(안 제15조)
- 잉여금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6조)
- 회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7조)
- 계리상황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(안 제18조)
- 업무상환설명서의 제출과 공표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9조)
-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20조)
-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21조)

### 3. 검토의견

- 하수도 사업은 하수설비를 구비한 경우는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필요.
- 독립채산 원칙에 따라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

요금인상 후의 현실화율이 30%에 불과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필요.

-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제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4. 참 고

-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